

 <b>한국소비자원</b> Korea Consumer Agency	<h1>보도자료</h1> <p>“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”</p>	 페이스북 @kcanews
		 인스타그램 @kca.go.kr
<b>이 자료는 4월 23일(화) 06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</b>		
<b>배포일</b>	2019년 4월 22일(월) (총 13쪽)	<b>담당부서</b> 서울지원 서비스팀 <b>담당자</b> 마미영 팀장 (02-3460-3041) 김민정 조정관 (02-3460-309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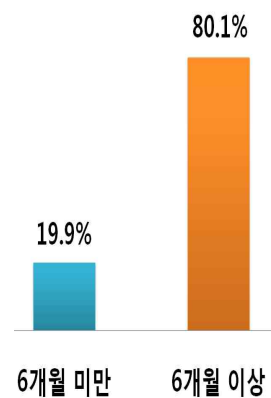
## 인터넷교육서비스, 6개월 이상 장기계약 피해 많아

- 장기 계약 시 계약내용 및 환불조건 등 꼼꼼히 확인해야 -

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교육서비스가 보편화 되면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.

최근 3년간(2016년~2018년) 한국소비자원(원장 이희숙)에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1,744건\*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4위를 차지했다.

<계약기간별 현황>



\* (2016년) 753건 → (2017년) 553건 → (2018년) 438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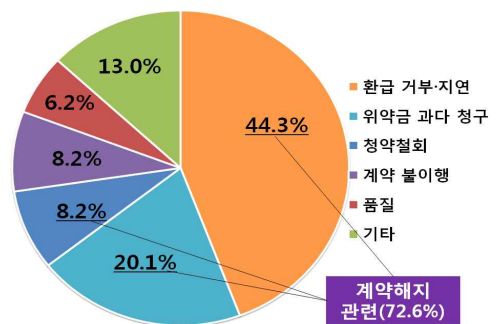
특히 할인이나 사은품 등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상술로 인해 ‘6개월 이상’ 장기 이용계약에서 발생한 피해 건수가 전체 피해 건수의 80.1%\*를 차지해 계약기간 선택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
\* 2018년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기간이 확인된 196건을 대상으로 분석

### □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2.6%로 가장 많아

2018년에 접수된 438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, 환급 거부·지연 44.3%(194건), 위약금 과다 청구 20.1%(88건), 청약철회 8.2%(36건)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2.6%(318건)로 대부분을 차지했다.

<피해유형별 현황>



‘환급 거부·지연’의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 등을 이유로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를 거부하거나, 의무사용기간을 주장하며 환급 책임을 회피한 사례가 빈번했다.

‘위약금 과다 청구’의 경우 계약기간 내 중도해지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일(1회)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산하거나, 사은품 등의 추가 비용을 과다 공제한 사례가 많았다.

‘계약 불이행’ 사례도 8.2%(36건)을 차지했는데, 계약 당시 자격증·어학 수험표를 제출하면 수강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한 후 이행하지 않거나, 자격증 시험 합격 또는 일정 점수 이상 취득 시 수강료를 전액 환급하겠다고 한 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.

□ 전자상거래, 방문판매를 통한 계약 많아

<판매방법별 현황>

2018년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전자상거래를 통해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이용한 사례가 40.0%(175건)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방문판매 29.0%(127건), 일반판매, 전화권유판매가 각각 9.1%(40건) 등의 순이었다.



수강과목은 수능 관련 강의가 29.9%(131건)로 가장 많았으며, 다음으로 자격증 24.0%(105건), 어학 20.3%(89건) 순으로 나타났다.

이 중 수능·자격증 과목은 방문판매를 통해, 어학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.

□ 40~50대 수능, 20대 자격증, 30대 어학 관련 소비자피해 다발

소비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418건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31.1%(130건)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20대 29.4%(123건), 30대 27.5%(115건) 등의 순이었다.

<연령별 수강과목 현황>

특히, 40~50대의 경우 자녀의 학업을 위한 수능 강의, 20대는 자격증 취득, 30대는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한 수강이 가장 많았다.

40대	수능	57.7%
50대	수능	43.3%
20대	자격증	39.0%
30대	어학	29.6%

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▲계약기간, 서비스 내용,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할 것 ▲장기 계약 시에는 계약해지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▲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의사표시를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.



넓게 들겠습니다  
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 
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www.kca.go.kr


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## < 붙임 >

### 1 소비자피해 현황

- (분석대상) 소비자원에 접수된 2018년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438건
- (분석내용) 피해유형, 수강과목, 계약기간, 판매방법, 연령 등

#### □ (피해 접수 건수)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4위

- 최근 3년간('16~'18년)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1,744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 다발 품목 4위를 차지함.

[최근 3년간 서비스 분야 소비자피해 다발 품목 현황]

(단위: 건)

순위	품목	2016년	2017년	2018년	계
1	헬스장·휘트니스센터	1,403	1,529	1,634	4,566
2	이동전화서비스	1,201	1,216	1,181	3,598
3	국외여행	860	958	977	2,795
4	인터넷교육서비스	753	553	438	1,744
5	스포츠시설이용	342	395	285	1,022

#### □ (피해 유형) 환급 거부·지연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 72.6%로 가장 많아

-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2.6%(318건)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, 계약 불이행 8.2%(36건), 품질 6.2%(27건) 등의 순이었음.
- 계약해지 관련 피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, ‘환급 거부·지연’이 44.3%(194건)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‘위약금 과다 청구’ 20.1%(88건), ‘청약철회’ 8.2%(36건)였음.

[피해 유형별 현황]

(단위: 건, %)

피해 유형		건수	비율
계약해지 관련 (318건, 72.6%)	환급 거부·지연 <sup>1)</sup>	194	44.3
	위약금 과다 청구 <sup>2)</sup>	88	20.1
	청약철회	36	8.2
계약 불이행 <sup>3)</sup>		36	8.2
품질		27	6.2
기타		57	13.0
계		438	100

**<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>**

1) 환급 거부·지연

- ▲ 계약서에 기재된 '환급 불가' 조항을 이유로 환급 거부
- ▲ 의무사용 기간 동안은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며 환급 거부
- ▲ 계약 당시 평생수강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계약 중도 해지 시 잔여수강료 환급 거부

2) 위약금 과다 청구

- ▲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일(1회)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 정산
- ▲ 휴강기간을 이용기간에 산입하여 계산
- ▲ 계약 체결 시 설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, 부가세, 사은품 등 추가비용을 공제

3) 계약 불이행

- ▲ 계약 당시 광고로 자격증·어학 수험표를 제출하면 수강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으나, 이를 불이행
- ▲ 자격증 시험 합격 또는 일정 점수 이상 취득 시 수강료 전액 환급을 약속했으나 불이행

**□ (수강 과목) 수능>자격증>어학 관련 소비자피해 74.2%**

- 수강 과목별로는 수능이 29.9%(131건)로 가장 많았으며, 다음으로 자격증 24.0%(105건), 어학 20.3%(89건) 순으로 나타남.

[수강 과목 현황]

(단위 : 건, %)

종류별	수능	자격증 취득	어학	공무원 시험	독학사, 학점은행 제 등	IT, ICT 관련	기타*	계
건수 (비율)	131 (29.9)	105 (24.0)	89 (20.3)	37 (8.5)	11 (2.5)	4 (0.9)	61 (13.9)	438 (100)

\* 가족공예, 경매, 직무관련, 미용, 법, 취업, 독서 큐레이션, 투자, 논술, 게임 등

**□ (판매방법) 전자상거래>방문판매>일반판매·전화권유판매 순**

-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신청한 사례가 40.0%(175건)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방문판매 29.0%(127건), 일반판매·전화권유판매가 각각 9.1%(40건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- 이중, 수능·자격증의 경우 '방문판매'(각각 51.1%, 37.1%)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, 어학은 59.6%가 '전자상거래'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남.

[판매방법 현황]

(단위 : 건, %)

구분	전자상거래	방문판매	일반판매	전화권유 판매	통신판매	TV 홈쇼핑	기타	계
수능	28 (21.4)	67 (51.1)	14 (10.7)	13 (9.9)	4 (3.1)	-	5 (3.8)	131 (100.0)
자격증	33 (31.5)	39 (37.1)	12 (11.4)	6 (5.7)	11 (10.5)	1 (0.9)	3 (2.9)	105 (100.0)
어학	53 (59.6)	15 (16.9)	7 (7.9)	7 (7.9)	4 (4.4)	2 (2.2)	1 (1.1)	89 (100.0)
공무원	23 (62.2)	-	1 (2.7)	7 (18.9)	3 (8.1)	-	3 (8.1)	37 (100.0)
독학사, 학점은행제 등	4 (36.3)	-	1 (9.1)	3 (27.3)	3 (27.3)	-	-	11 (100.0)
IT, ICT 관련	2 (50.0)	1 (25.0)	-	1 (25.0)	-	-	-	4 (100.0)
기타	32 (52.4)	5 (8.2)	5 (8.2)	3 (4.9)	10 (16.4)	2 (3.3)	4 (6.6)	61 (100.0)
건수 (비율)	175 (40.0)	127 (29.0)	40 (9.1)	40 (9.1)	35 (8.0)	5 (1.1)	16 (3.7)	438 (100)

□ (계약기간) '6개월 이상' 장기 계약 피해 80.1%

- 계약기간이 확인된 196건을 분석한 결과, 6개월 이상 장기 계약이 80.1% (157건)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, 6개월 미만 단기 계약은 19.9%(39건)에 불과함.

[계약기간별 및 피해 현황]

(단위 : 건, %)

계약기간	건수		비율	
1월 이상 ~ 6월 미만	39		19.9	
6월 이상 ~ 1년 미만	24	157	12.2	80.1
1년 이상 ~ 2년 미만	79		40.4	
2년 이상 ~ 3년 미만	44		22.4	
3년 이상	10		5.1	
계	196		100	

□ (연령별) '40대' 피해 가장 많아

- 연령이 확인된 418건을 분석한 결과, 40대가 31.1%(130명)로 가장 많았고, 20대 29.4%(123명), 30대 27.5%(115명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- 20대의 경우, '자격증' 관련 피해가 39.0%(48건)로 가장 많았으며, 30대는 '어학' 29.6%(34건), 40~50대는 '수능'(각각 57.7%(75건), 43.3%(13건)) 관련 피해가 주를 이룸.

[연령별 현황]

(단위 : 건, %)

구분	10~19세	20~29세	30~39세	40~49세	50~59세 이상	계
건수 (비율)	20 (4.8)	123 (29.4)	115 (27.5)	130 (31.1)	30 (7.2)	418 (100)

[연령별 피해다발 수강과목 현황]

(단위 : 건, %)

구분	10~19세	20~29세	30~39세	40~49세	50~59세이상
1위	수능	자격증	어학	수능	수능
	10 (50.0)	48 (39.0)	34 (29.6)	75 (57.7)	13 (43.3)
2위	자격증	어학	기타	어학	자격증
	5 (25.0)	25 (20.4)	32 (27.7)	21 (16.2)	11 (36.7)
3위	어학	공무원	자격증	자격증	어학
	4 (20.0)	19 (15.5)	18 (15.7)	16 (12.3)	3 (10)
4위	공무원	수능	공무원	기타	독학사, 학점은행제 등
	1 (5.0)	15 (12.2)	14 (12.2)	14 (10.8)	2 (6.7)

## 【사례1】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

임\*\*씨는 2018. 7. 2. 자격증 관련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, 570,000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함. 2018. 7. 10.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하였으나, 계약 후 7일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함.

## 【사례2】 의무사용기간 수강을 주장하며 환급 거부

이\*\*씨는 2018. 4. 10. 자녀의 학습을 위해 인터넷교육서비스 1년 계약을 체결하고, 2,376,000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함. 2018. 5. 자녀가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함. 의무사용기간 7개월까지는 수강해야 한다며 계약해지 및 환급을 거부함.

## 【사례3】 위약금 및 이용금액 과다 청구

김\*\*씨는 2018. 5. 17. 자녀 학습을 위해 인터넷교육서비스 18개월 계약을 체결하고, 3,564,000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함. 2018. 6. 25. 교육서비스 관리 방식이 예상과 달라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함. 3개월 수강료 1,544,000원과 사은품으로 제공됐던 노트북 750,000원 총2,294,000원 공제 후 1,270,000원을 환급 하겠다고 함.

## 【사례4】 계약 불이행

최\*\*씨는 2018. 3. 10. 어학시험 관련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399,000원을 결제함. 수강 이후 2회에 걸쳐 780점 이상 취득 시 100%환급, 850점 이상 취득 시 120% 환급, 900점 이상 취득 시 150% 환급, 950점 이상 취득 시 200% 환급, 990점 취득 시 300% 환급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계약함. 최\*\*씨는 2회에 걸쳐 955점을 획득해 환급 신청을 했으나, 사업자는 100%만 환급 가능하고, 출석을 모두 해야 인정 가능하다고 하며 이를 거부함.

## &lt;&lt; 계약체결 전 &gt;&gt;

- 계약기간, 서비스 내용,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다.
  - 특약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중도 해지 시 할인 전 정상가로 계산하여 환급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특약사항 및 해지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, 구두로 약정하는 내용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함.
- 장기 계약 시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다.
  - 중도해지 및 환급 거부 등에 대비해 현금 지급, 신용카드 일시불 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\*를 하는 것이 좋음.
  - \* 할부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으므로 할부수수료 발생 여부 및 요율을 카드사에 확인 필요

## &lt;&lt; 계약체결 후 &gt;&gt;

- 계약 해지 시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한다.
  - 사업자가 계약해지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, 즉시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음.
- 의무이용기간을 설정했더라도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.
  - 1개월 이상 계약인 경우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상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언제든지 중도 해지가 가능하며, 의무이용기간 또는 일정기간 이내 계약해지 불가라는 약정이 있더라도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움.
- 수능 관련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해지 시 위약금 부담 의무 없다.
  - 초·중·고 대상 인터넷강의는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(원격교육시설)의 “교습비 반환기준”에 따라 계약해지 시 위약금 부담의무가 없고,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음.
- 사업자와 분쟁 발생 시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.

※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,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(국번 없이 1372, [www.ccn.go.kr](http://www.ccn.go.kr))에 도움을 요청한다.



44. 인터넷콘텐츠업 (1 - 3)		
분쟁유형	해결기준	비고
1)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	o 계약취소	*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적용 제외함.(학원 운영업 및 평생 교육시설운영업 적용)  * 기납부한 요금은 환급하고, 미납요금 및 위약금 청구행위를 금지함.
2) 허위,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	o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환급	*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.(예 :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)
3)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구입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	o 유료 콘텐츠 구입가 환급	* 단,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콘텐츠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는 제외되며, 콘텐츠의 훼손에 대한 책임 여부,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시기, 콘텐츠가 공급된 사실 및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함.
4) 사업자가 계약전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	o 계약 취소	* 중요사항이라 함은 아래내용을 말함.
<p>&lt;사업자가 계약전 고지해야 하는 중요사항 - ‘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’ 제8조&gt;</p> <p>1. 사업자 및 콘텐츠에 관한 정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콘텐츠의 제작자 및 판매자(수입콘텐츠의 경우 수입업자 및 게임물의 경우 배급자 포함)에 관한 사항(성명, 전화번호, 주소, 전자우편주소 등)</li> <li>- 콘텐츠의 명칭·종류 및 내용(이러닝의 경우 시범학습을 포함)</li> <li>- 콘텐츠 이용제한에 관한 내용 : 청소년유해매체(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), 게임물(게임물의 등급), 비디오물(비디오물의 주제·선정성·폭력성·대사·공포·약물·모방</li> </ul>		

44. 인터넷콘텐츠업 (1-3)

분쟁유형	해결기준	비고
<p>위험 등의 우려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정보), 음악영상물(등급)</p> <p>2.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콘텐츠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</li> <li>- 콘텐츠의 공급 방법 및 시기</li> <li>-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기한·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콘텐츠계약이 계속거래에 해당할 경우 계약의 해지와 그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</li> <li>- 콘텐츠의 교환·반품·보증과 그 대금 환급의 조건 및 절차</li> <li>-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콘텐츠의 전송·설치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</li> <li>- 이용자피해보상, 콘텐츠에 대한 불만 및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</li> <li>- 거래에 관한 약관</li> <li>-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콘텐츠의 경우·이용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·대금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분할하여 콘텐츠를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, 이용자가 콘텐츠를 공급받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</li> <li>- 콘텐츠의 가격 외에 이용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 및 금액</li> <li>- 거래일시·거래지역·거래수량·인도지역 등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</li> <li>-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</li> </ul>		

61. 학원운영업, 평생교육시설운영업

분쟁 유형	해결 기준	비고
<p>1)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계약해제 요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허위·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</li> <li>-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</li> <li>-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(단,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,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함)</li> </ul> <p>2) 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 요구</p> <p>3)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,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, 폐강,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</p> <p>4)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교습개시 전</li> <li>- 교습개시 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교습기간이 1월 이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</li> <li>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</li> <li>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이후</li> </ul> </li> <li>· 교습기간이 1월 초과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</li> <li>○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</li> <li>○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</li> <li>○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</li> <li>○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</li> <li>○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</li> <li>○ 수강료의 2/3 해당액 환급</li> <li>○ 수강료의 1/2 해당액 환급</li> <li>○ 미환급</li> <li>○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(교습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.)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</li> </ul>	<p>*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 학교교과 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함.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.</p> <p>* 계약 시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따로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함.</p> <p>* 일할(日割)계산</p> <p>* 일할(日割)계산 하여 사유발생일로 부터 5일 이내에 환급함.</p> <p>* 총 교습시간은 교육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함.</p>

## 참고2

## 학원법 및 동법 시행령

※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8조,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함.

1.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
2. 학원설립·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
3.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

[별표 4] 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

구 분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제18조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	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	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	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	반환하지 않음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	교습 시작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	교습 시작 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
### 비고
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### 참고3

## 평생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

※ 「평생교육법」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여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함.

1. 법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
2. 평생교육기관의 설치·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
3.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
4.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[별표 4] 교습비등 반환기준(제18조제3항 관련)

구 분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	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	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	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	반환하지 않음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교습 시작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	교습 시작 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
#### 비고
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